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9(금)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38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나. 예산조치: 2023년 본예산 편성
- 다. 합의기관: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3. 4. 26. ~ 2023. 5. 16. (20일 이상)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자전거 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5,764건의 사고(연평균 100명 사망, 6,128명 부상)가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
발생(건)	6,920	5,936	5,659	4,771	5,633	5,667	5,764
사망(명)	107	113	126	91	79	83	100
부상(명)	7,333	6,292	5,932	5,041	6,020	6,150	6,128

※ 자료 : 경찰청

-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전거 보험 가입 따른 보험의 보장 내용, 약관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9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